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조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위원회는 회사의 독립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 추천할 독립이사의 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이사회결의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독립이사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 임기 만료 기타의 사유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제5조(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사내이사를 제외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 ④ 위원장은 그 의결결과에 따라 이사회에 독립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소집)

위원회는 회사의 독립이사 후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제7조(소집권자)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결의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선임할 독립이사 후보의 법령 및 정관상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유무를 심사하여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의안,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11조(내부 규정의 제정)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단, 법령 변경에 따른 단순한 조문 수정, 회사 내 조직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이 규정의 체계와 효력에 직접적인 효력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개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설립등기일	제정
2026년 3월 24일	개정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한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